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2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김민전·박충권·조경태

인요한 • 유용원 • 정연욱

박성훈 • 박상웅 • 주진우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의 실효와함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이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공 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형 종료 후 20년 경과)함.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중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포섭함(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의2 및 제6호·제7호·제8호·제1호·제12호 신설).
- 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함 (안 제19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의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토킹범죄
-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9.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
-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	
이 없다.	
1.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	<u>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u>
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	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에 해당하는 者	<u>자</u>
<u><신 설></u>	<u>1의2. 피성년후견인</u>
<u><신 설></u>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지 아니한 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u>니한 자</u>
<u><신 설></u>	2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u>나 정지된 자</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

<신 설>

<신 설>

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 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u>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신 설>

<u><신</u>설>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 임처분<u>을 받은 날</u>

9.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

	중에 있는 자
<u> <신 설></u>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u>자</u>
<u> <신 설></u>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u>자</u>